

초소형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2항제3호 관련)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의 독립된 변환빔 전조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하·좌·우측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전방 등화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변환빔 전조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나)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결합된 1개의 변환빔 전조등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다만, 변환빔 전조등이 다른 전면 등화와 수평위치에 설치될 경우에는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다) 2개의 변환빔 전조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길이 방향

변환빔 전조등은 초소형자동차의 전방에 위치하여야 하고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독립적으로 설치된 주행빔 전조등과 변환빔 전조등 간 최외측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 관측각도

1)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단일 등화인 경우 변환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좌측 및 우측은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2개가 설치된 경우에는 변환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외측 45도,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라.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마. 작동조건

1) 변환빔 전조등은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 2) 주행빔 전조등에서 변환빔 전조등으로 전환시 변환빔 전조등은 동시에 점등될 것
 - 3) 변환빔 전조등에서 주행빔 전조등으로 전환시 변환빔 전조등은 동시에 소등될 것.
- 다만, 변환빔 전조등은 주행빔 전조등과 동시에 점등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바. 표시장치

변환빔 전조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비점멸 녹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사. 그 밖의 기준

- 1) 변환빔 전조등 설치 높이(발광면 최하단)가 0.8미터 이하인 경우 컷오프선 수직위치 초기 설정범위는 - 1.0퍼센트에서 - 1.5퍼센트로 조절할 것
- 2) 변환빔 전조등 설치 높이(발광면 최하단)가 0.8초과 1.0미터 이하인 경우 컷오프선 수직위치 초기 설정범위는 - 1.0퍼센트에서 - 2.0퍼센트로 조절할 것
- 3) 변환빔 전조등 설치 높이(발광면 최하단)가 1.0미터 초과인 경우 컷오프선 수직위치 초기 설정범위는 - 1.5퍼센트에서 - 2.0퍼센트로 조절할 것

2. 광도는 별표 5의18 제2호 또는 별표 6의4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